

**「2014년도 지적측량분야」
자치구 표본검사(평가) 시행 결과보고**

2014. 11.

도시계획국
(토지관리과)

「2014년도 지적측량분야」 자치구 표본검사(평가) 시행 결과보고

자치구에서 시행한 지적측량성과 분야, 지적재조사 분야 등 지적측량 업무 전반에 대한 표본검사(평가)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.

I 추진근거

-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제25조,
「지적측량시행규칙」 제28조, 「지적업무처리규정」 제31조 제8항
 - 지적측량수행자의 과실 등으로 인한 지적측량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 확보

II 점검 개요

- 업무범위 : 2013년 지적공부정리를 수반한 지적측량 업무
 - 지적공부 정리 현황

(2013년 실적)

구 분	합계 (필)	신규 등록		토지분할		등록전환		등록사항정정	
		건	필	건	필	건	필	건	필
서울시	5,491	41	41	2,158	5,000	89	89	320	361

- 점검대상 : 25개 자치구
- 점검기간 : 2014.10.13.~10.28.
 - 표본검사 점검표에 따라 실시(2개 팀 운영)

○ 주요점검 사항

- 지적측량 성과관리 및 검사 분야
- 지적재조사 분야
- 지적측량기준점 분야
- 지적측량 관련 시스템 분야
- 지적선진화 추진사례 등

Ⅲ 점검결과

총 평

- 전 자치구에서 지적재조사, 세계측지계 변환, 경계분쟁 민원 등의 지속적인 증가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음에도, 모든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지적(토지)정보를 정확하게 유지·관리하기 위하여 지적측량 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.
- 지적·공간정보의 융·복합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시행과 및 디지털지적 구축을 위하여 세계측지계 변환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.
-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지침(2011.7월)에 따라 분할측량 등으로 경계를 확정할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정확하게 작성·관리하고 있으나, 일부 자치구에서 자료관리(전산파일) 및 등록부 작성 등이 다소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
-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토지분할 등의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실지(현장) 검사 측량을 직접 실시하여 정확한 경계를 결정하고 있으나, 전자평판도입에 따라 기 구축된 측량파일을 활용하여 일부 측량을 실시하는 사례

- 모든 측량의 기준인 지적기준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나, 일부 자치구에서 관리가 다소 미흡하여 폐기된 기준점(현장은 보존)을 활용하여 지적측량성과를 작성하는 사례
- 지적측량결과도는 지적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에도 측정점위치설 명도, 측량성과 파일명 표기, 기준점 거리 및 방위각, 지적기준점 등의 제도, 검사날인 등이 다소 미흡한 실정임.
- 부동산관련 민원예약제, 조직문화 혁신, 복구공시조서 전산화, 도시시설물 공간 정보 구축 등 지적행정의 획기적인 개선과 혁신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최상의 민원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음.

분야별 점검결과

■ 지적측량성과 검사 분야

- 지적공부 정리를 수반하는 분할측량 등으로 토지경계를 확정할 경우 지상경 계점등록부 작성 관리 철저.(재강조)
 - 지상경계점 작성지침 이행 철저(토지관리과-22987호, 2013.10.29.)
 -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저장 기능 신설필요 → 국토교통부 업무개선 요청(서울시)
 - *지상경계점등록부 전산화일을 전자결재에 포함하여 관리(은평구)
- 전자평판측량 도입에 따라 이미 작성되어 있는 기존 지적측량파일은 후속 으로 실시되는 지적측량성과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만 사용하고 현지측량은 반드시 새로이 실시 할 것(재강조)
 - *지적업무처리규정 제23조14항 이행철저

- 지적측량결과도 작성시 측정점위치설명도, 측량성과 파일명 표기, 지적기준점 이동량 기재, 평판점 이동거리, 검사자 날인 등 지적업무처리규정 이행 철저(재강조)
- 공유토지 분할 실태카드 및 지적사무정리부 개선(금천구)
 - 공유토지 분할 대상지에 대하여 실태카드(지적도, 건물현황, 토지대장, 건축물대장, 이용 상황, 등기내용 등)를 작성하여 찾아가는 민원상담 추진
 - 지적사무정리부를 전산화하여 신속·정확한 통계정보 제공 등
-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운영실태 점검(중구)
 - 종로·중구지사에서 2013년 실시한 지적공부정리를 수반하지 않는 경계 복원 및 현황측량에 대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 실태 등을 점검하여 민원 발생 사전 예방
- 토지이동처리결과 SMS알림 서비스(중랑구)
 - 토지이동에 따른 민원서류 접수, 처리, 등기부 정리결과 등을 민원신청인에 SMS알림 서비스를 시행하여 시민 편의도모
- 부동산행정정보 자료정비 시범사업 추진(강북구)
 -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된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부동산종합공부관리 시스템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적장부의 신뢰성 확보
- 첨단 측량장비 사용자 교육실시(양천구, 서초구, 금천구)
 - 지적측량 검사업무 등의 역량강화를 위해 GPS 및 토탈스테이션 등 첨단 측량장비 사용자 교육실시
 - *확정측량 검사업무 강화 등에 따라 전 자치구 GPS측량 등 교육 요청(성북구)
 - '15년 서울시 직장교육에 반영예정

■ 지적기준점 분야

- 지적공사에서 설치·이관된 기준점에 대해서도 지적소관청에서 설치한 기준점과 동일하게 관리 철저(재강조)
- 지적기준점 망실원인 분석업무 개선(서대문구)
 - 기준점 망실원인의 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점 주변 공사 전·후 사진자료, 공사유형 등을 DB로 구축하여 망실의 원인규명의 정확성과 신속성 확보
- 지적기준점 현장조사 모바일 서비스(강서구)
 - 연속지적도에 수치지형도와 새주소 건물번호를 표시하여 정확한 위치 파악과 기준점 사진을 탑재하여 모바일로 현장조사 업무 등 지원
- 지적기준점 웹GIS 시스템 구축(양천구)
 - 지적기준점을 GPS측량을 실시하여 수신환경 현황(음영) 및 수신환경 정보를 전산화하여 서비스 시행
 - 세계측지계 변환에 필요한 공통점, 검사점 등의 분류 및 관리체계 마련

■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 분야

- 지적업무 활성화를 위한 조직문화 혁신 시행(서대문구)
 - 市 지적행정 조직 중 가장 소수의 인원(정원:지적14명)으로 지적행정 업무, 지적재조사사업, 세계측지계변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한 노력이 인정되어 정원조정(지적+3명)을 완료하는 등 조직문화 혁신 시행
-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(은평구)
 -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원활히 하고자, 특별법 시행 후 市 최초로 산새마을1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여 타 자치구 표준모델을 제시함.('14년 산새마을2지구 사업추진 중)
 - *그 외 중구, 중랑구, 성북구, 동작구에서 재조사사업 선도적 수행 중

■ 지적측량 관련 시스템 분야

- 디지털 토지이동결의서 구축사업(성북구)
 - 토지이동결의서, 지상경계점등록부, 측량원도를 전산파일 형태로 자료 관리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자체 프로그램 개발
- 맞춤형 GIS 지도제작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실시(금천구)
 - 국공유지, 기준점, 부동산중개업소, CCTV, 무인발급기, 재설함 위치 등의 맞춤형 GIS 지도제작 시스템 구축 및 민원 서비스
- GNSS 측량장비를 활용한 직업 체험교육 실시(성동구)
 -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사업 체험교실을 운영 하여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체험과 지적행정 업무 홍보
- 온라인 민원발급서비스 주민 센터 확대운영(양천구)
 - 구토지(임야)대장, 폐쇄지적(임야)도를 주민 센터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발급업무 개선시행
- 지적기준점 실시간 전산도면 작성(관악구)
 - 지적기준점을 전산도면(네오맵)에 등록하여 현장조사 등의 실시간 업무 (조회, 결과입력 등) 지원
- QR코드를 활용한 지적기준점 정보제공(강남구)
 - 지적기준점에 QR코드를 부착하여 스마트폰으로 기준점정보 및 기준점 위치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

■ 지적선진화 및 모범사례 분야

- 부동산 민원예약제 시행(성북구)
 - 직장, 가장생활 등으로 바쁜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생활여건을 감안 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지원(토·일, 공휴일 민원예약제)

○ **토지경계표시 알람서비스 시행(구로구)**

- 토지분할에 따라 새로이 결정되는 토지분할 경계점에 대하여 측량성과도와 함께 측정점 위치설명도를 함께 제공하여 언제든지 경계점을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

○ **소유자 없는 미등록 토지 발굴(강동구, 강서구)**

- 미등록 도로를 복구등록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및 미 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(강동구)
- 미등록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신력 제고 및 세수증대(종로구)
- 마곡지구 내 미등기 토지를 보존등기 처리하여 보상업무 등 원활한 사업 지원(강서구)

○ **토지이동처리 원스톱 공간마루 운영(영등포구)**

-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소통 공간마루를 운영하여 각종 토지문제 등의 민원해결로 시민을 위한 배려행정 구현

○ **복구공시조서 전산화(도봉구)**

- 한국동란으로 소실되어 복구한 토지대장 등의 지적공부 복구 자료를 부책으로 관리하였으나, 이를 전산화(PDF)하여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

○ **미등록 집합건물 명칭 일원화(강서구)**

-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 등의 집합건물의 실사용 명칭과 등기부에 등록된 명칭이 불일치하여 시민의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명칭으로 정정등기 완료

○ **안양천 도시시설물 공간정보 구축(양천구)**

- 전국 최초로 하천(안양천)의 도시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공간정보(위치)좌표를 GPS측량 등으로 구축하여 하천 내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구현

■ 업무개선 요청(국토교통부)

○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선요청

- 지적확정측량 관련 산출되는 세계좌표 저장기능 신설 요청
- 지상경계점등록부(전산파일) 저장기능 신설 요청

○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 요청

-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의 고시내용에는 경도와 위도가 포함되어 있으나 「지적측량시행규칙」 제4조의 기록·관리 내용에는 경도 및 위도가 “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”고 규정되어 업무에 혼란이 있으므로 「지적측량 시행규칙」 제4조 “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” 규정 삭제요청

IV 표창선정

■ 기관표창 : 최우수 서대문구 / 우수 은평구

- 市 지적행정 조직 중 가장 소수의 인원으로 지적행정업무, 지적재조사사업, 세계측지계변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한 노력이 인정되어 區 정원조정을 완료하는 등 조직문화 혁신과 전반적인 업무추진이 우수함(서대문구)
-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원활히 하고자, 특별법 시행 후 市 최초로 산새마을1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여 타 자치구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또한 산새마을2지구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는 등 전반적인 업무추진이 우수함(은평구)

■ 유공공무원 표창 : 서대문구, 은평구, 광진구, 성북구, 강북구, 양천구

*2014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통보(인사과-2839호, 2014.2.3.)

V 행정사항

- 지적사항 보완 등 직원업무 교육실시 : 전 자치구
 - 지적사항 보완, 업무 재강조 사항 등 직무교육 실시
 - *지적사항 보완여부 이행사항 등 '15년 표본 검사 시 중점점검
- 업무혁신, 제도개선 등 공유 : 국토교통부, 전 자치구
 - 표본검사 결과보고, 제도개선 요청 : 국토교통부
 - 업무혁신 사례, 제도개선 횡단전개 : 전 자치구
- 기관 및 유공공무원 공적제출 : 해당 자치구
 - 시장표창 결격요건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선발 및 신청절차 이행